

이미 말소된 경미한 전과사실을 보도한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 1993.2. 25. 자 결정

- IBvR 172/ 93 판결 -

적용법조

연방중앙정보관리법 제 51 조,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

판결요지

연방정보관리부에서 이미 말소되어 있는 전과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그리고 문제성을 가지고 보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허용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와 피해자 개인의 일반적인 인격권과의 사이의 법익의 형량 내지는 이익의 형량이 행해져야 한다.

사실개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연방정보관리부에서 이미 말소되어 있는 전과사실에 대한 보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이다.

소원제기인은 기자이다. 위 기자는 1991 년 가을에 2 개의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쓴 사람이다. 기사의 대상은 주 범죄조사국의 어떤 자리의 임명에 관한 것이었다. 위 기사의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언급되어 있다. 위 수사국의 국장은 K 에 소재하는 범죄수사경찰국의 부국장 자리를 지원하고 있었다. 위 지원은 R 범죄수사과장의 지원을 말하는 것인데, R 은 11 년 전에 어떤 가게에서 절도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 동안 위 사건은 시효에 걸리게 되었고, R 은 다시 처벌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위 공무원을 하필이면 그가 범행을 한 도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고 여기고 있었다. R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1 심법원인 지방법원은, 헌법소원 제기인에 대하여, 본안소송(민사소송)의 원고에 관련하여 그의 전과사실이나 그 밖의 그 행위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보도하거나, 보도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위 법원들에서의 견해에 따르면, 연방정보보관소 기록에서 이미 말소된 범죄행위에 관련하여 공공연한보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소원 제기인의 보도의 이익도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익형량 내지는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익형량 내지는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은 주로 다음의 점에 중점을 두었다. 즉 연방중앙정보관리법 제 51 조는 그 정보의·전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금지는 사법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1 심법원인 지방법원은, 원고가 위 직위를 지원함으로 인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보도할 현실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위

결론에는 고등법원도 역시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렇지만 위 법원은 원고가 「이미 저질렀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비밀로 하고 싶은」 원고의 이익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떠한 자리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고위의 공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항상, 위 연방중앙정보관리법 제 51 조의 입법목적에 반해서 항상 아무리 작은 전과범죄라 할지라도 새로이 언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위 법 제 51 조의 규정취지와는 반대로 그 관련자는 어떤 공직에 지원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위 법원들은 위 헌법소원 제기인의 보도가 위 직위의 지원이 있는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행해졌고, 나아가 다른 보도를 하던 중에 부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헌법소원 제기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문 및 제 2 문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및 의사표시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심판결들은 법익 내지는 이익의 형량을 함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기본권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이 보도를 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가 그의 비이성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보도를 할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원심판결들은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판결이유

II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기는 하다 그러나 승소의 판결을 받을 충분한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93 조 b 1 항 1 문 2 호)

1. a) 원심판결들에 대한 심사의 기준은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에 근거한 언론의 자유에 기초하는 기본권이다. 현재 문제로 되어있는 원 판결의 주문에 의한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인으로부터 어떤 특정의 주장(권리)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인에 대하여, 원고의 전과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장래에 있어서 금지시키는 부담을 부과한 것일 뿐이다. 이는 즉위 중지의 명령이 공표의 방법 즉 언론에의 보도에 관계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인은 언론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기능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리하여 독일 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문에 기한 언론의 자유에 근거한 그 기본권이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이다(BVerfGE 85, 1, [13]).

b) 이 사건 헌법소원은 원심법원이 내린 민사법상의 중지명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중지명령을 연방헌법재판소가 심사함에 있어서는 일반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일반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기본권의 근본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BVerfGE 7, 198[204f]: 18, 85[92ff] 참조).

c) 연방헌법재판소는 Lebach 판결(BVerfGE 35, 202)에서, 어떤 범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법익의 형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들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었다.

- ① 어떠한 범죄행위를 범죄자의 이름, 사진 또는 묘사를 하여 공공연히 보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자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그의 실수가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고 따라서 그의 인격이 일반대중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쳐지게 되기 때문이다(BVerfGE 35, 202 [226]).
- ② 위 침해의 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묘사의 방법이 문제로 된다. 그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배려한 TV에 의한 보도는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신문에 의한 문자나 말에 의한 보도보다도 훨씬 더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가 크다 할 것이다(a.a.O.S.226f). 그리하여 언론매체의 전파의 정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a.a.O.S.227).
- ③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그 범죄자의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그 범죄의 발생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범죄행위도 역시 언론이 이를 보도하여야 할 책무를 지는 그 시대의 주요사건에 속하는 것이다(a.a.O.S.230).
- ④ 그리하여 어떠한 형사범죄에 관련한 생생한 보도를 받아볼 정보의 이익은 일반적으로는 행위자의 개인적 인격권의 보호보다는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a.a.O.S.231).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자의 개인적 영역에의 침범은 소위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경미한 범죄이거나 또는 소년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명을 특정하거나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죄자를 특정 지우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아니한다(a.a.O.S.232).
- ⑤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형사재판 절차와의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큰 경우에는—중범죄인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범죄자의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 하고 싶은」 권리가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a.a.O.S.233f).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도가 허용되어야 할 경우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이제는 이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와의 시간적인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a.a.O.S.234),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속에서 석방되는 시점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사회화 내지는 사회에의 재구성원화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한계가 그어진다고 할 것이다(a.a.O.S. 235)

이와 같은 원칙들은 일반 법원의 위 판결들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OLG Hamburg, AfP 1976, S. 137[138]; OLG 뮌헨, AfP 1981, S. 360f; OLG KOIn, NJW 1987, S.1418 각 참조). 연방중앙정보기록부의 전파의 말소 및 연방중앙정보관리법 제 51 조의 위 정보의 사용의 금지조항은, 민사법원의 판례에 의한다면, 어떤 범죄행위에 관한 보도의 허용성의 판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OLGKOIn, AfP 1975,S. 866; OLG Frankfurt, NJW1976, S.1410).

2.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심사해보면 원심판결들은 헌법상의 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본건과 같은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인 인격권의 표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준들을 적용시켜보면, 본건에서

문제로 되는 원심판결들의 경우에는 크게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BVerfGE 35, 202[219]: 54, 208 (216f)).

a)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신문기사가 원고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은 하등의 더 이상의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헌법소원 제기인은 이 점을 그의 헌법소원에서 명백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원제기인은 단지,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막중한 중요성이 위 법익 내지는 이익형량의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다음의 점이 분명히 되었다. 즉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인 범행의 종류와 경중, 범행의 시점 이래로 이미 경과된 시간, 연방중앙정보관리법 제 51 조에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인격권 보장의 이념 등으로부터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익에 명백히 보다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하며, 그리고 원고의 상점에서의 절도행위는 이제 일반공중들이 더 이상 비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보도의 시점으로부터 이미 10 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리하여 연방중앙정보기록에서 말소된 위전과는, 이미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범죄수사 경찰의 부 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새로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지금까지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판시된 사안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헌법소원 제기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반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법원은(위 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등법원 역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원고가 위 자리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이 보도할 명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들은 법익 내지는 이익의 형량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익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위 보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론의 압력이라는 것은 위법 제 51 조가 추구하고 있는 전용금지라고 하는 목표 즉 위 직책에의 임명에 있어서 이미 말소된 전과는 소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들은, 위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부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위 지원이 있고, 경찰국장의 비판적인 처신이 있을 후 헌법소원 제기인이 이에 대한 보도를 하기까지에는 이미 수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원고의 위 지원은 위 기사에서 단지부수적으로 언급됨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b) 이와 같은 이론을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원리상 하등 문제로 될 것이 없다.

이미 말소된 전과 또는 그 기초로 되는 행위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법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항상 위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은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원심판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헌법소원 제기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로,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수년 전에 행해진 범행을 증명하는 새로운 생생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개인의 범행사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권리가 항상 양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연방중앙정보관리부에 말소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보도를 하여야 할 새로운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독일기본법 제 5 조제 1 항 제 2 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일반적인 인격권과의 사이의 법익의 형량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기준들을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시켜, 새로운 법익형량을 하여 보면 다른 결과에 다다를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